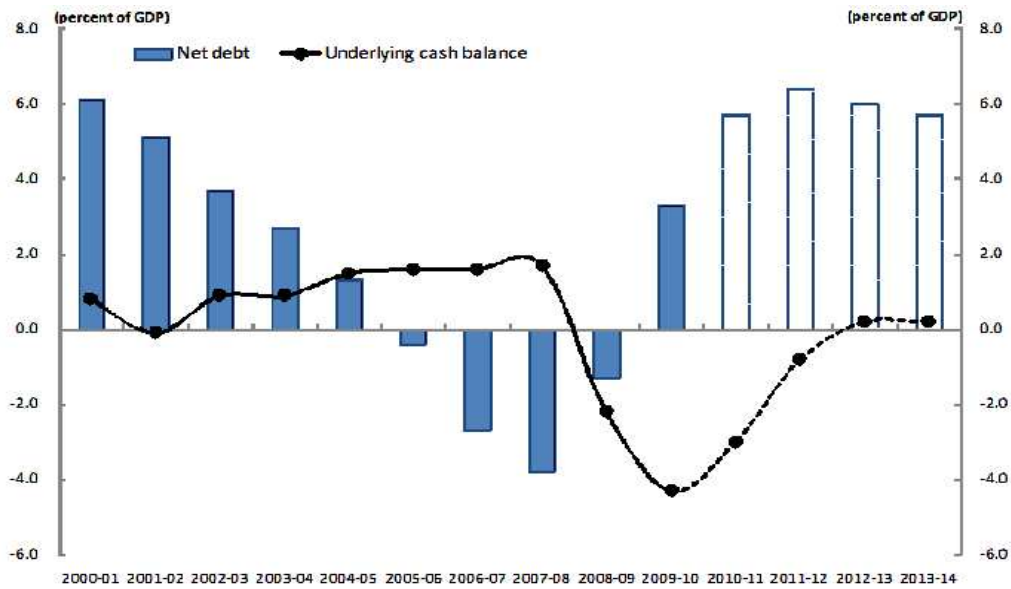


VII. 호 주

1. 재정추이

- 호주는 200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예산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FY2008-09부터 예산흑자 달성에 실패
 -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고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FY2008-09 예산수지는 전년 대비 3.9%p 감소(FY2007-08: 1.7% → FY2008-09: Δ 2.2%)
 - FY2009-10의 예산수지는 1970년 이후 최고치인 Δ 4.3%의 적자를 기록

[그림 VII-1] 예산수지 및 순채무 추이 및 전망



주: FY2009-10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2. 재정건전화 방안

- 호주는 금융위기 여파로 1970년 이후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FY2008-09 예산안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 (재정건전화 정책) 호주경제는 시기적절한 경기부양조치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FY2009-10부터 점차 긴축재정기조로 운영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
 -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실질지출 증가율을 2%로 제한
 -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 개선으로 인한 세입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
 - 최근 주정부의 홍수 피해로 연방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해복구예산 마련을 위해 한시적 특별세를 도입하고 예산감축계획 발표
 - 이와 같은 재정건전화 조치로 FY2012-13에 예산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FY2016-17에 GDP 대비 1%의 예산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을 수행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개편을 추진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령연금지급을 위해 연금수령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연금 소득 심사를 강화
 -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퇴직연금 추가적립액 기준을 상향조정
 - 광물자원임대세의 신설로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세정책(법인세율의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원 및 자원 분야에의 투자 등에 활용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추가적인 세입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자원세 도입, 담배소비세 인상, 한시적 특별세 도입 등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입원 발굴(FY2009-10 예산안)
 - 고소득자(25만호주달러 이상)들의 소득에 있어서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손실 부분을 공제하는 소득세법 규정 강화
 - (현행) 고소득자가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해 소득손실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소득에서 손실된 소득 금액만큼 공제
 - (개정) 비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
 - 동 제도는 FY2009-10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7억호주달러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
 -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foreign employment income)에 대해 과세
 - (현행) 원천지 국가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은 호주 소득세에서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개정)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 호주정부가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호주달러로 환산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해외구호활동 및 해외 과세당국에서 과세면제하고 있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세 면제
 - 동 제도는 FY2009-10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6억 7,500만호주달러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

- 연구개발비(R&D)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FY2010-11부터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
 - (현행)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25%를 소득공제하고, 과거 3년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우 150%의 소득공제 적용
 - (개정) 매출액 2천만호주달러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R&D 지출액의 45%에 상당하는 환급가능 세액공제가 적용(이는 150%의 소득공제 효과와 동일)되고, 2천만호주달러 이상인 법인은 R&D 지출액의 40%에 상당하는 환급 불가능 세액공제가 적용(이는 133%의 소득공제 효과와 동일)
 - 동 제도로 향후 3년에 걸쳐 8억 5,500만호주달러 수준의 세수 증대 예측

□ 수해로 인해 FY2012-13의 예산흑자 달성 목표가 어려워지자 호주정부는 한시적 특별세(Temporary Flood Replacement Levy) 도입을 추진(2011. 2. 10)

- 수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FY2011-12 동안 호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득세의 형태의 특별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하원에 상정(2011. 2. 24 하원 통과)
- 특별세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연간 5만~10만호주달러 소득자의 경우, 5만호주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0.5% 부과
 - 연간 10만호주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과세소득에 1% 부과
 - 홍수피해가구와 연소득 5만호주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동 특별세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현행 의료비 세금(Medicare levy)에 추가되는 방식임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세제 도입(FY2010-11 예산안)
 - FY2003-04 이후로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의 자원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

- 업의 세부담액에 큰 변화가 없어 공정한 세금 부과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
- FY2012-13부터 석탄과 철광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30%의 세율로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를 부과
 - 동 세제 도입으로 인한 조세수입은 자원분야에의 환원 및 FY2010-11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세정책 재원으로 활용

<참고 1> 자원세제 도입 배경 및 변화 추이

- 호주정부는 FY2010-11 예산안을 통해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초과이익세(Resource Super Profit Tax) 도입을 발표
 - 2012년 7월 1일부터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가 적용되는 해상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제외한 모든 자원·에너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발생된 수익에 40%의 세율로 세금 부과
 - 연방정부의 자원 관련 세금(crude oil excise tax)은 자원초과이익세로 통합되나,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로열티는 지속
 - 자원초과이익세의 도입으로 인해 FY2013-14까지 추가로 120억호주달러 수준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자원초과이익세 도입 발표 후 광산업계의 반발이 심하여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자 2010년 7월 기존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해 기업들과의 협상 타결에 성공
 - 세금의 명칭을 자원초과이익세에서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로 변경
 - 광물자원임대세는 석탄과 철광석 개발사업으로 국한시켜 적용하여 기존 적용대상기업 2500개에서 320개로 대폭 축소
 - 석유자원임대세를 확장하여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석유·가스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적용세율도 기존 40%에서 30%로 10%p 세율 인하

- 또한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도 확대하여 수익률의 12.7%(기존보다 7% 추가 인정)까지 광물자원임대세를 과세 면세함
- 수정된 자원세제개혁에 따라 기존 전망치에 비해 15억호주달러 정도 세입이 줄어들 전망으로 동 재원으로 추진될 기타 세제개혁도 수정이 불가피
- 법인세율 인하폭 수정: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FY2012-13부터 2%p 이하한 28%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자원세제 수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1%p 인하된 세율 적용

- 흡연인구를 줄이고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담배소비세(tobacco excise tax) 인상 (FY2010-11 예산안)
 - 2010년 4월 30일부터 담배소비세를 25% 인상,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50억호주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의료 및 보건개혁의 재원에 충당할 계획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 GDP 대비 1%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실질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삭감(또는 폐지), 연금개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삭감 또는 폐지(FY2009-10 예산안)
 - (현행)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정부가 30~40%를 지원
 - (개정) 연간 7만 5천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독신이거나 연간 15만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환급금 삭감 대상이 됨

- 연간 12만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독신과 연간 24만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환급금 폐지
- 동 계획은 FY2010-11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19억호주달러 정도 예산을 절감

<표 VII-1> 민간의료보험 환급금 개정 계획

	Current surcharge thresholds (projected 2010-11)	Tier 1	Tier 2	Tier 3
Singles	\$0 - \$75,000	\$75,001 - \$90,000	\$90,001 - \$120,000	\$120,001+
Families	\$0 - \$150,000	\$150,001 - \$180,000	\$180,001 - \$240,000	\$240,001+
Medicare levy surcharge	nil	1.00%	1.25%	1.50%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Less than 65 years	30%	20%	10%	nil
65 to 69 years	35%	25%	15%	nil
70 years or over	40%	30%	20%	nil

자료: FY2009-10 Budget Paper No.1, 2009. 5

-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
 - 호주정부는 FY2009-10 예산안 발표 시부터 FY2011-12~FY2012-13의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
 - 최근에 발표한 FY2010-11반기 경제·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흑자 달성을 위해 FY2010-11 예산안보다 더 강한 재정지출 감축안을 발표

<표 VII-2>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 증가율 전망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0-11 예산안	4.9	0.9	-0.6	1.7	1.9
FY2010-11반기 경제·재정 보고서	4.9	1.5	-1.1	1.0	1.6

주: 실질지출 증가율은 현금주의 기준의 지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FY2010-11 Budget, 2010. 5
 FY2010-11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08-09 및 FY2009-10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거의 종료 (FY2010-11 예산안)

- FY2008-09에는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및 「국가건설 및 일자리 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을 발표, 이에 더하여 FY2009-10에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를 발표하여 경제성장 제고에 주력
- FY2010-11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지 않고 이전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하는 단계임

□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금융기관간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보증 및 예금보증계획(Guarantee of Large Deposits)정책을 종료(2010. 2. 7)

- 정부는 호주 금융권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을 2010년 3월 31일부로 종료
 - 동 정책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호주 은행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

□ 수해로 인해 FY2012-13의 예산흑자 달성 목표가 어려워지자 호주정부는 약 28억호주달러 규모의 연방예산 감축계획을 발표

- 미래대비투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 및 지출 감소로 향후 4년 동안 18억호주달러 절감
 - 청정 자동차 환급 제도(Cleaner Car Rebate Scheme) 중단
 - 친환경 자동차 혁신 펀드(Green Car Innovation Fund) 폐지
 - 탄소 포집·저장 프로그램(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및 태양광 프로그램(Solar Flagships programs), 지구촌 탄소 포집·저장 연구소(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에 대한 지출 감소와 재원조달 연기

- 지역 인프라 프로그램(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및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 프로그램(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Program)의 우선순위 재조정
 - 기타 재정지출 감소 및 시행 연기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연기로 향후 4년간 약 10억호주달러 절감
-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연기하여 약 10억호주달러의 수해복구재원을 마련하고, 수해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부족한 기술인력들을 보강

<참고 2> 수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연방정부의 복구예산 추산 내역 및 자원조달계획

<표 VII-3> 연방정부의 복구예산 추산 내역

(단위: 백만호주달러)

재해구호 및 복구제도(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 (NDRRA))¹⁾	-4,900
<p>동 제도에 하에 호주정부는 특정 자연재해로 인한 주 및 준주의 피해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며 개인구호 및 필수적인 공공인프라 복구, 지역사회 복구 보조 등을 포함</p>	
재해복구지원금(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²⁾	-600
<p>동 지원금은 사회보장법하에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호주 거주자에게 일회성 한하여 지급되며 수령자격이 있는 자에게 성인 1명당 1,000호주달러와 (16세 미만)각 자녀당 400호주달러가 지급. 신청자는 약 4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p>	
재해로 인한 소득손실보조금(Disaster Income Recovery Subsidy)³⁾	-120
<p>동 보조금은 홍수와 극심한 기후로 인해 소득 손실을 입은 고용인과 중소기업자, 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매 2주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직보조금(Newstart allowance)의 최대율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 신청자는 약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p>	
주정부의 구호기금에 대한 기부금(Donations to the State relief funds and appeals)	-12
<p>호주정부는 퀸즐랜드와 빅토리아 주정부의 구호기금에 약 1,200만호주달러를 기부</p>	
Total⁴⁾	-5,632

주: 1) 동 제도는 일차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주정부의 구호기금과 사회간접자원의 복구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주정부는 NDRRA 제도를 통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동 지원금은 2011년 1월 10일부터 31일 사이에 호주 북동부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
 3) 동 보조금은 2010년 11월 29일을 기점으로 2010년 12월~2011년 2월까지 이어지는 홍수와 극심한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 소득을 잃은 것이 증명된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시행
 4) 전체 지원액은 1차 추정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FY2011-12 예산안에 포함될 것임
 자료: www.treasurer.gov.au

<표 VII-4>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

	Impact on underlying cash balance					Total \$m
	2010-11 \$m	2011-12 \$m	2012-13 \$m	2013-14 \$m	2014-15 \$m	
Flood Levy	0	1560	235	0	0	1,795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a temporary levy on individual tax payers to raise funds for th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effort. From 1 July 2011, with effect for the 2011-12 income year only, a levy of 0.5 per cent will apply to taxable income of between \$50,001 and \$100,000 and 1.0 per cent to taxable income above \$100,000.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an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for a flood event in 2010-11 will be exempt from paying the flood levy.						
Cleaner Car Rebate Scheme - not proceed	0	157	119	85	69	429
The Cleaner Car Rebate Scheme was to provide grants of \$2,000 to motorists who scrap their pre-1995 passenger vehicles and purchase new, low emission, fuel efficient vehicles. The Government will not proceed with the scheme. This will provide savings of \$429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Priority 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PRIP)	0	50	125	125	50	350
The \$800 million PRIP is being established to invest in projects identified by local communities in regional areas. The Government will reallocate \$350 million to support flood recovery of funding from the PRIP to support flood recovery efforts in regional Australia. This will be allocated under the NDRRA in consultation with Queensland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						
Capital Development Pool (CDP) - abolish from 1 January 2012	0	55	78	81	84	299
The Capital Development Pool will cease funding of new projects from 1 January 2012, saving \$299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All current projects already funded under the program are unaffected.						
Green Car Innovation Fund - abolition	3	16	6	26	183	234
The Government will wind up the Green Car Innovation Fund from 2011-12, realising savings of \$234 million from uncommitted funds over the forward estimates and \$401 million over the life of the program. The Green Car Innovation Fund was initially established in 2008 as part of the Government's A New Car Plan for a Greener Future to assist projects aimed at producing low-emission, fuel-efficient vehicles and components.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NRAS) - limit dwelling target to 35,000	9	22	63	75	96	264
The Government will limit the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dwelling target to 35,000 by 2013-14 rather than 50,000, saving \$264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Priority will be given to applications from flood affected areas across Australia in allocating the remaining incentives (around 13,000), in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State.						
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110	18	0	122	250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Flagships program forms part of the Clean Energy Initiative and provides grants for projects to help accelerat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low emission coal technology by supporting industrial-scale projects in Australia. The Government will reduce its funding for the CCS flagships program by a total of \$250 million across the forward estimates period, with \$160 million of this to be re-phas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						
Solar Flagships -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75	50	-50	175	250
The Solar Flagships program forms part of the Clean Energy Initiative and provides grants to support the deployment of large scale solar energy generation projects in Australia. The Government will reduce its funding for the Solar Flagships program by a total of \$250 million across the forward estimates period, with \$190 million of this to be re-phas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						

<표 VII-4>의 계속

	Impact on underlying cash balance					Total \$m
	2010-11 \$m	2011-12 \$m	2012-13 \$m	2013-14 \$m	2014-15 \$m	
Renewable Energy Bonus Scheme - Solar Hot Water Rebate- capping funding	81	78	0	0	0	160
The Renewable Energy Bonus Scheme – Solar Hot Water Rebate provides a rebate of \$1,000 for a solar hot water system or \$600 for a heat pump hot water system and is available to help eligible home-owners, landlords or tenants to replace their electric storage hot water systems. The Government will cap funding from this program resulting in a saving of \$160 million over two years.						
Green Start Program- not proceeding with Round 2	88	41	1	0	0	129
On 21 December 2010,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losure of the Green Start program. Savings from not proceeding with Green Start Round 2 of \$129 million over three years will be reallocated to provide funding fo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floods.						
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redirection	0	30	35	35	0	100
The Building Better Regional Cities program provides funding to participating councils across Australia to invest in local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support new housing developments. This measure will redirect \$100 million of funding to re-building infrastructure in flood affected council areas, including those not originally targeted by the initiative.						
Liquefied Petroleum Gas (LPG) Vehicle Scheme - capping annual claims	0	43	26	27	0	96
The Liquefied Petroleum Gas Vehicle (LPG) scheme provides grants for factory conversions and post factory conversions to LPG fuel systems. The Government will cap the Scheme at 25,000 claims per annum for the life of the Scheme from 2011-12. This will provide savings of \$96 million over three years.						
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Fund - discontinue funding	0	12	24	25	26	88
Funding for the 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Council will be discontinued from 1 January 2012, providing savings of \$88 million over four years. The Government remains committed to continu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Australia, and is establishing new quality and regulatory arrangements for higher education through: a new national regulatory and quality agency, the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a new National Register of Higher Education Providers; a new Higher Education Standards Framework; and the My University website.						
Solar Homes and Communities Plan	85	0	0	0	0	85
The Solar Homes and Communities Plan (SHCP) provided rebates of up to \$8,000 for the installation of solar photovoltaic systems. The program ended in June 2009 and residual rebates are still being processed. The Government will cap the amount remaining available for outstanding claims, allowing \$85 million to be redirected to the flood recovery effort.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0	60	35	-20	-20	55
The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was established to connect parties around the world to address issues and learn from each other to accelerate the deployment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s. The Government will reduce funding for the Institute by a total of \$55 million over the forward estimates with \$5 million of this contribution to the Institute to be repathed to beyond the forward estimate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contribute \$100 million to the Institute over the forward estimates period.						
O-Bahn City Access	27	29	0	0	0	56
The Australian Government will withdraw its funding to the O-Bahn City Access project in Adelaide. This is the result of a significant scope reduction of the original project, resulting in only limited transport benefits. The project will not proceed at this point in time.						
Rephasing Infrastructure Projects - Queensland	6	71	136	255	-142	325
Rephasing Infrastructure Projects - Other	*	*	*	*	*	675
Total						5,641

Full details will be published in the 2011-12 Budget.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 발표(FY2009-10 예산안)

-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증가에 대비하여 노령연금(Age pension)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
 - 2017년 7월 1일부터 연금수령연령이 65세에서 65.5세로 상향 조정
 - 이후 2년마다 수령연령이 6개월씩 늘어나 2023년 7월 1일에는 67세에 도달
- 연금 소득심사(income test)에 적용되는 누진율 변경
 - '09. 9. 20일부터 소득심사에 적용되는 누진율을 40센트에서 50센트로 인상
 - 소득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독신의 경우 초과 소득 1호주달러당 연금지급금이 50센트씩, 부부의 경우 각각 25센트씩 감소(단, 연금 전액 수혜자는 해당사항 없음)
 - 소득심사 개정으로 인해 향후 4년간 12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330만명의 연금수혜자(노령연금, 장애인지원연금, 미망인연금 등)들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지급금 인상조치
 - '09. 9. 20일부터 독신을 위한 최대 연금요율을 2주 기준 65호주달러로 인상
 - 이는 기존 기초연금 인상분 60호주달러에 새로운 연금보조금 5호주달러를 추가한 형태임
 - 부부를 위한 최대 연금요율은 2주 기준으로 20.3호주달러 인상
 - 부분요율 적용 대상 독신인 경우 2주 기준 최소 20.2호주달러의 부분적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
- 연금수혜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간소화
 - '09. 9. 20일부터 현재 연금과 더불어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allowance)과 새로 지급되는 연금보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충금(Pension Supplement)¹⁴⁾ 형태로 지급

14) 연금보충금이란 일상 가계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수령자로 소득지원지급금을 받고

□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 상한 조정 및 개인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축소 (FY2009-10 예산안)

-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추가적립(concessi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s)의 상한 조정
 - (현행) 연간 5만호주달러까지 퇴직연금 추가적립분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50세 이상인 자는 연간 10만호주달러임)
 - (개정) FY2009-10부터 추가적립 상한을 2만 5천호주달러로 하향조정(50세 이상인 자는 연간 5만호주달러임)
 - 동 개정으로 인해 향후 4년간 28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개인이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FY2013-14까지 한시적으로 축소
 - 현재 개인이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150%이나 FY2009-10~FY2011-2012까지는 100%, FY2012-13~FY2013-14까지는 125%로 축소 지원한 뒤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 150%로 지원
 - 이와 같은 한시적 조치로 인해 향후 4년간 14억호주달러의 예산 절감

있거나 사별수당(Bereavement Allowance), 간호인 지급금(Carer Payment), 미망인B연금(Widow B Pension), 아내연금(Wife Pension),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화 및 용역세 보충금(Good and Service Tax Supplement), 공공요금 수당(Uilities Allowance), 전화비 수당(Telephone Allowance), 의약품비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